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치자금영수증 미교부 가능 사유 신설 등 〉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52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등록 시 정치자금영수증 미교부 가능 등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28인
2. 제 안 일 : 2024. 12. 10.
3. 회 부 일 : 2024.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금융과 정치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제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후원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후원 정보가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되었음에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불필요한 중복 업무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을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로 하고,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 시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5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등록 시 정치자금영수증 미교부 가능 등(안 제17조제1항 등)

개정안은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에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기부금단체가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서 기부금 수령내역을 발급한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①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u>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u> 정치자금영수증을 <u>후원인에게</u>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① ----- ----- <u>후원회</u> <u>회계보고일 이내에</u> ----- ----- <u>교부하여야</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후원회가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다.	⑤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u>시스템에서 기부금단체가 기부금</u> <u>수령내역을 발급(전산수록)한 경</u> <u>우</u>
⑥ ~ ⑭ (생략)	⑥ ~ ⑭ (현행과 같음)

후원금은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¹⁾ 등을 말하며 후원 방식으로는 후원자가 계좌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후원회에 직접 후원을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간편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를 통해 후원하고 있음.

「정치자금법」 제17조제13항²⁾에 따르면 후원회는 동법 제34조제4항³⁾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후원금 납부는 후원자가 신원인증을 받기 때문에 후원자의 인적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후원자가 후원회에 전자결제 대행사를 통해 후원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1) 「정치자금법」

제3조(정의) 4.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2) 「정치자금법」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⑬ 후원회는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신용카드·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입금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3)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2.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정하고 회계책임자와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한 약정서(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후원회가 해당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여도 입금자의 주소 및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후원회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성명과 금액만 표시되어 있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음.

그런데, 후원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후원회가 임의로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17조제1항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에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후원회에 의한 임의적인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정치자금영수증 교부 시한 및 대상>

정치자금영수증	현행	개정안	
교부시한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	
		연간모금한도액 모금할 수 있는 연도 (7월 31일, 다음해 1월 31일)	연간모금한도액 2배 모금할 수 있는 연도 (선거일 후 30일, 다음해 1월 31일) 단, 선거일이 12월 중에 있는 경우 (7월 31일, 다음해 1월 31일)
대상	후원인	후원인	

다만, 개정안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후원회가 후원인에게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⁴⁾

다음으로, 현행법은 후원회로 하여금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후원인이 정치자금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거나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후원인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후원회가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원회가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후원 정보를 등록하면 후원회 및 후원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바, 후원회로 하여금 후원인에게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를 중복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4) 「정치자금법」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후원회가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다.

1. 후원인이 정치자금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익명기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기부로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3. 후원인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이에, 개정안은 기부금단체가 국세청 전자기부영수증 발급시스템에서 기부금 수령내역을 발급한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복될 수 있는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를 줄이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① 개정안에 따라 후원인에게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 ② 후원회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후원 정보 입력 시 후원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만, 후원자는 본인의 개인신상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⁵⁾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후원자는 후원회로부터 후원금 기부 시 등록된 이메일 등으로 정치자금영수증을 수신받거나,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정치자금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음.

5) 후원인은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전자결제번호 확인, 핸드폰 본인인증또는 공동인증서 확인 후 정치자금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음.

국세청고시 제2024-17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4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 ① 기부금단체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 등의 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을 확인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하거나 일괄발급할 수 있다.
- ②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③ 기부자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개별발급할 수 있다.
- ④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수록할 수 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영수증의 교부기간을 연장하고 정치자금영수증 미교부 사유를 신설하는 것은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